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20가단505838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최상경, 송호섭

피고B

변론 종결2020. 9. 10.

판결 선고2020. 10.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50,1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2020. 5.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0년부터 원고를 포함하여

다수의 보험회사와 사이에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함으로써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4.경부터 2015. 10.경까지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75,187,74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 ②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사기죄
기소되어 2019. 12. 19.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4620호), ③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위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피고에 대하여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다만 피고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2020. 5. 26.
피고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으며(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58호),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④ 한편, 피고가 위와 같이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범죄사실에는 원고를 기망하여 2010. 5. 4.경부터 2015. 10. 28.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33,850,164원을 편취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상당액인
33,850,16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5. 10.
2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 5.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장동민